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-50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. 6. 30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」 개정으로 마포구의회 의원정수가 1명 증원(18명→19명)됨에 따라 “상임위원회 위원정수”를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변경 [행정건설위원회: 8명→ 9명] 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직선거법」

나. 기 타

- 1) 개정 조례안: 붙임
- 2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8명”을 “9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행정건설위원회 - <u>8명</u></p> <p>3. (생 략)</p>	<p>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9명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「공직선거법」

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) ① 시·도별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,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·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·도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·시·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.

■ 공직선거법 [별표 3]

시·도별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 총정수표(2,978명)

시 도	총 정 수
서울특별시	424
부산광역시	182
대구광역시	120
인천광역시	122
광주광역시	68
대전광역시	63
울산광역시	50
경 기 도	460
강 원 도	174
충 청 북 도	136
충 청 남 도	176
전 라 북 도	198
전 라 남 도	247
경 상 북 도	288
경 상 남 도	270

제24조의3(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) ①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선거구(이하 “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”라 한다)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·도에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.

②~⑤ 생략

⑥ 시·도의회가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26조(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) ②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는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, 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, 그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·도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」

「공직선거법」 제20조, 제23조, 제26조와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 제4조,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.

[별표]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

자치구 별	선 거 구 명	지 역 구 의원정수	선 거 구 역
	소 계	17	의원정수 19 (지역구 17, 비례대표 2)
마포구	마포구 가 선거구	2	공덕동
	마포구 나 선거구	2	아현동, 도화동

	마포구 다 선거구	2	용강동, 신수동
	마포구 라 선거구	2	대흥동, 염리동
	마포구 마 선거구	2	서강동, 합정동
	마포구 바 선거구	2	서교동, 망원1동
	마포구 사 선거구	2	망원2동, 연남동, 성산1동
	마포구 아 선거구	3	상암동, 성산2동